**시험대상자 권리 장전**

캘리포니아 법, 건강 및 안전 규정 섹션 24172에 따라, 의학적 실험이 수행되는 연구에 시험대상자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러한 참여에 동의하도록 요청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해당 개인의 유창한 언어로 작성된 다음 권리 목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다음에 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1. 실험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2. 의학적 실험에서 따라야 할 절차 그리고 사용할 모든 약물이나 기기에 관한 설명을 받을 권리.

3. 실험에서 합당하게 예상되는 모든 수반되는 불편감과 위험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4. 해당되는 경우, 실험에서 합당하게 예상되는 시험대상자에 대한 모든 이익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5. 시험대상자에게 유익할 수 있는 모든 해당 대안 절차, 약물 또는 기기 그리고 그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과 이익에 대한 공개 설명을 받을 권리.

6. 만약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실험 후 시험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학적 치료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7. 실험 또는 포함된 절차에 관한 문의 사항을 질문할 기회를 가질 권리.

8. 언제든지 의학적 실험 참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시험대상자는 편견 없이 의학적 실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받을 권리.

9. 캘리포니아 법에 규정된 대로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동의서 사본을 받을 권리.

10. 시험대상자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강제, 사기, 기만, 강요, 위압 또는 과도한 영향도 받지 않고 의학적 실험 참여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권리.

시험대상자 서명

(*또는 시험대상자의 후견인, 보호자 또는*

*캘리포니아 법에 규정된 다른 대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